

아파트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
최소화를 위한 협조 요청문

- 국민의 생명보호 및 화재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-

아파트 화재안전 대책 추진 건의



강 남 구

- 국민의 생명보호 및 화재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-

아파트 화재안전 대책 추진 건의

화재안전 대책 필요성

대 상	아파트, 특히 피난시설 및 피난기구가 없는 1992년 10월 이전 허가받아 지어진 아파트
문제점	피난에 취약하여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 우려 크나, 안전대책 및 국민의 안전의식 부재

국민의 생명보호 및 화재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화재안전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

I 현 황

1992년 이전 아파트, 피난시설기구 없어 피난에 취약

■ 아파트 피난시설 설치 의무 규정 신설, 1992년 10월 시행

○ 피난시설 설치 규정은 92.10.25.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된 아파트부터 적용

□ 3층 이상 층 발코니 세대간 경계벽에 피난구 또는 경량칸막이 설치 의무 규정

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4조제5항 (신설 92.07.25./ 92.10.25. 시행)

□ 4층 이상 층 대피공간 설치 의무 규정

- 경량칸막이, 경계벽 피난구, 하향식 피난구 중 1가지 설치한 경우 예외

「건축법 시행령」 제46조제4항 및 제5항 (신설 05.12.02./ 전문개정 08.10.29.)

■ 아파트는 피난기구 설치 면제

○ 대다수 아파트는 피난기구 설치 면제 대상으로 피난기구가 없음

□ 피난기구 종류 : 완강기, 피난사다리 등

「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」 제4조 [별표1]

□ 설치위치 : 지상 3층~10층

「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 [별표5]

□ **편복도형 아파트 또는 발코니 등을 통해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계단실형 아파트 설치 면제** 「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」 제5조(개정 93.11.11.)

피난에 취약한 아파트, 강남구 전체의 57% 차지

■ 강남구 아파트 현황

구분	단지수 (개소)	동수 (동)	세대수 (세대)	비율 (%)	비고
구 전체	266	1,577	120,105	100	20세대 이상 공동주택
피난취약	80	858	67,847	56.5	1993.12.월 이전 사용승인된 아파트 현황

아파트 화재, 강남구 전체의 11% 차지

■ 강남구 아파트 화재 분석(최근 5년간)

연도	전체 화재현황	아파트 화재 현황						비고
		건수	원인			인명피해		
			전기	가스	기타	사망	부상	
최근5년	2,025	231	37	1	193	3	11	
2010	372	38	4	0	34	2	5	
2011	420	41	5	1	35	0	1	
2012	385	37	8	0	29	1	1	
2013	421	69	14	0	55	0	0	
2014	427	46	6	0	40	0	4	

II

문 제 점

피난에 취약한 아파트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전무

- 아파트 화재안전 관리방향이 이미 피난시설·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를 대상으로만 설정
- 전체 아파트의 57%를 차지하고 있는 피난시설·기구가 없는 아파트를 위한 안전관리 대책 부재
 -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입주민을 보호하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서 제작·배포한 「아파트 화재안전 가이드」의 경우에도 피난시설·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에만 적용 가능한 내용으로 제작
 - 피난시설·기구가 없는 아파트에 대한 예방요령 및 대피요령 등 부재

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및 안전의식 부재

- 관리주체(관리사무소)
 - ▶ 피난시설·기구가 없는 아파트의 경우 현황 및 이에 대한 예방요령 등 별도 안내 미 실시
 - 관리주체는 주민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안내할 의무가 있음에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함
- 언론단체
 - ▶ 현재, 언론보도에서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피난시설의 관리에 초점을 맞춰 보도
 - 피난시설이 없는 아파트에 대한 문제점 및 안전관리 대책 등의 내용은 다루지 않음
- 피난시설·기구가 없는 아파트 입주자(국민)
 - ▶ 입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방교육(훈련)이 없어, 예방요령 등을 알 수 없음(화재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음)

Ⅲ

건의사항(화재안전 대책)

대피공간 등 자발적 설치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홍보 및 대책마련

■ 피난시설·기구가 없는 아파트의 문제점 안내

- 화재 발생 시 세대 밖으로 나가기 어려울 경우, 피난시설·기구를 이용해 대피해야 함
- 그러나, 1992년 10월 이전 허가받아 지어진 아파트에는 피난시설·피난기구가 없음

■ 피난시설 필요성에 대한 홍보(안내) 및 국가적차원의 대책마련 필요

- 따라서, 피난시설·기구가 없는 아파트에서는 **불길 및 연기를 막을 수 있는 대피공간(안전구역)이 반드시 필요함**
 - ※ 작은 방 등의 출입문을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하여 대피공간 대체 가능

우리 구 추진계획 아파트 화재안전 대책

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언론보도 추진

- 현 실태 및 문제점을 알려 국민 스스로 심각성을 인지토록 유도하여,
- 대피공간 설치 등의 화재예방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

② 아파트 화재안전 관리 안내문 작성·배포

- 작성내용
 - 화재발생시 화재대피 요령을 유형별(피난시설·기구 유무)로 작성
 - 피난시설 유지·관리 요령
 - 피난시설·기구가 없는 경우 대피공간 설치 등의 화재 예방요령
 - ※ 대피공간 설치 방법 포함
 - 디지털 도어록 내화기준 적합 제품 사용 안내 등
- 활용방법
 - 배포 : 관내 모든 아파트
 - 다양한 매체 활용, 각종 행사, 교육, 간담회, 회의 시 홍보

③ 대피요령 스티커 제작·배포

- 알기 쉬운 그림형태로 스티커 제작 활용
- 시범아파트 스티커 배부 및 의견수렴
-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관내 모든 아파트로 확대 실시

가스불은... **잠깐!** 전열기 코드는...
끄셨나요? **뺐으셨나요?**

강남소방서 119 강남구 재난안전과 02-3423-6941

화재시 안전한 대피요령

- 물을 발견하면 '물이야' 하고 큰소리로 외쳐서 다른사람에게 알린다.
- 화재발생시 경보 비상벨을 누른다.
-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한다.
- 손잡이가 뜨거우면 문을 열지 말고 다른 길을 찾는다.
-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하면 옥상으로 대피한다.
- 불길 속에서는 낮은 자세로 물에 적신 수건으로 얼굴을 감싼다.

※ 상기 스티커(안)은 제작 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음.

④ 다양한 매체 활용 지속 홍보

- SNS, 반상회, 소식지, 지역방송 등
- 관내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(1,076대) 및 각종 전광판(미디어폴)
- 구 및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(전산정보과, 각 동 주민센터)

아파트 화재안전 교육(훈련) 실시

- 아파트 동대표 · 관리자 및 입주자 대상 화재안전 교육 및 훈련 필요
- 더 나아가,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아파트 화재안전 교육 필요

우리 구 추진계획 아파트 화재안전 교육(훈련)

1 각종 교육 및 회의 시 아파트 화재안전 교육(홍보) 병행

- 아파트 동대표 및 관리자 교육
- 민방위 대원 교육

- 구민 및 직원 대상 재난 안전교육
- 전 동장(행정팀장) 주관 : 아파트 동대표 및 관리소장 간담회 개최

2 매월 강남소방서와 함께하는 화재안전 훈련(교육)

- 강남소방서와 MOU 체결 : 아파트 화재 발생 경감을 위한 공동노력
- 훈련기간 : 시범지역 선정하여 매월 실시
- 훈련대상 : 아파트입주자, 동대표, 관리사무소장 등
- 훈련내용 : 화재안전 훈련 및 “1가구 1소화기 갖기 운동” 병행 추진

「아파트 화재안전 가이드」 보완 제작

■ 현재 사용 중인 「아파트 화재안전 가이드」는 모든 아파트에 피난시설·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많음

- 피난시설·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에서의 대피요령만 있어,
 - ※ “가이드의 대피시설은 건축법 및 소방법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다”는 내용이 가이드 끝 부분에 작은 글씨로 표기되어 있으나 인식하기 어려움
- 피난시설·기구가 없는 아파트 주민이 가이드를 읽을 경우 화재예방을 하지 못 할 수도 있음

■ 사각지대가 없도록, 피난에 취약한 아파트 설명과 별도의 예방 및 대피 요령 추가 필요

- 피난에 취약한 아파트 설명
 - 안) 1992년 10월 이전에 허가받아 지어진 아파트는 피난시설·기구가 없어, 화재발생 시 세대 밖으로 나가기 어려울 경우 대피가 어렵습니다.
- 예방요령
 - 안) 대피공간과 피난기구를 설치하고 개인소화기 비치합니다.
 - ※ 대피공간의 설치 방법 : 작은 방 등에 갑종방화문 설치
- 대피요령
 - 안) 다른 출구 없으면 연기가 방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틈을 옷 등으로 막습니다.(물을 적시면 더욱 좋습니다.)

① 「피난취약 아파트 화재안전 가이드」 자체 제작

- 화재 예방요령 및 대피요령을 유형별 작성(피난시설 및 피난기구 유무)
 - 피난취약 아파트 설명
 - 대피공간, 피난기구 설치 및 개인소화기 비치 권장
 - 디지털 도어록 내화기준 적합 제품 사용 안내 등
- ※ 국토교통부 '가이드' 보완 전까지 단기 사용